

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2656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5. 3. 21.
제출자 : 달성군수

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공기업법」제5조에 근거하여 2003년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약 20여년간 공영개발사업 추진 실적이 없으며, 특별회계는 운영되고 있지 않으므로 본 조례에 대한 존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」를 폐지함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공기업법」제5조 및 「지방재정법」제9조 (* 붙임)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다. 기타
 - (1) 입법예고(2025. 2. 20. ~ 2025. 3. 12.)결과 : 의견 없음
 - (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 - (3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 - (4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 - (5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 - (6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 조례 폐지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 조례는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

□ 「지방공기업법」

제5조(지방직영기업의 설치)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·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·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1. 8. 4.]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9조(회계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② 특별회계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목적세에 따른 세입·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5. 28.>

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4. 5. 28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4. 5. 28.>

[전문개정 2011. 8. 4.]